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33
----------	------

발의연월일 : 2021. 3. 23.

발 의 자 : 강민정 · 이상현 · 김진애
강득구 · 용혜인 · 최강욱
서동용 · 배진교 · 김윤택
이은주 · 강은미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와 민주주의가 현재처럼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시민이 선출한 지역 행정 최고 책임자이므로 시·도지사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2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2조제1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시장·부지사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u> <u>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u>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u><단서 삭제> 이 경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삭 제></u>

<u>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u> ④ ~ ⑥ (생략) 부 칙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u> ⑫ ~ ⑥⑨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⑩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⑫ ~ ⑥⑨ (현행과 같음)
--	---